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연장 조치 및 효력상실 회복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조치에 대해

갱신기간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소를 관할하는 각 운전면허시험장, 중앙·아츠베츠 우량운전자 갱신센터 및 각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후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갱신기간만료일부터 3개월 동안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이때 갱신절차 개시 신청서 또는 이미 이 신청을 하신 분으로 재신청을 하는 분은 갱신절차계속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연장기간 내에, 운전면허강습 수강이나 적성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갱신절차를 다시 밟으셔야 합니다. 장소는 갱신연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이미 갱신기간 연장조치를 받아 운전 및 갱신가능기간이 2021년 12월 28일까지인 분 (면허증효력상실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기간】

- 각 경찰서 평일 8시 45분~17시
- 각 운전면허시험장 평일, 일요일 8시 45분~17시
(하코다테, 아사히카와, 구시로, 오비히로, 기타미 운전면허시험장은 일요일의 경우 첫째, 셋째 일요일만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운전면허기간 효력상실 회복에 대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해 면허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필요한 강습을 받은 후 유효기간만료 재취득신청 (특별 신규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재취득 운전면허시험은 적성검사에 합격하면 학과·기능시험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과거의 법규위반 등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